

울산지방법원 2021. 11. 30 선고 2020가단561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

변 론 종 결 2021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30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3. 21. 체결된 증여계약을 35,646,896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5,646,8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6. 19. 주식회사 D에게 이자는 매월 1,000,000원, 변제기는 2017. 12. 30.로 정하여 80,000,000원을 대여하였고,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대여금채권’이라고 한다).

나. 주식회사 D는 위 변제기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, 2018년 1월부터의 이자 지급도 지체하였다.

다. 이후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여 위 대여금 채권 중 44,353,104원을 회수함에 따라 35,646,896원이 남게 되었다.

라. 한편 C은 울산 북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170,000,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는데, 2018. 3. 21. 전세계약을 해지한 후 위 전세보증금 중 144,000,000원을 배우자인 피고가 지급받도록 하였고, 피고는 위 돈을 보태어 울산 북구 H아파트 I호에 대하여 J와 사이에 160,000,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.

마. C은 2018. 3. 21.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, C과 피고는 2021. 6. 7.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8, 9, 17, 19호증, 을 제3호증, 을 제5,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8. 3. 21. C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144,000,000원을 피고가 지급받도록 할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, 사해의사

1)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것인바(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), 앞서 본 것과 같이 C이 자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

144,000,000원을 피고로 하여금 받도록 한 것은 그 금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서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행위'라고 한다)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C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받은 것으로 적정한 재산분할이고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이 사건 증여행위는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가 'K'라는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시점인 점, ② C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행위 후 약 3년 3개월이 지난 2021. 6. 7.에야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, ③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C과 피고가 이혼을 마음먹고 재산분할에 관한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. 또한,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C은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2018. 3. 12.자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의 범위 내인 35,646,896원 범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35,646,8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은정